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2021. 9.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1-71
----------	-------

2021. 9. 9.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건축과)
- 나. 제 출 일 : 2021. 8. 27.
- 다. 회 부 일 : 2021. 8. 31.

2. 제출이유

법령에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규정 마련(안 제10조제2항제1호)
- 나. 이의신청 등 규정 삭제(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2)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1. 5. 20.~ 6. 9.(의견 없음)
- 2) 부패영향자율평가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4) 규제개혁심의위원회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

-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사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르고자 삭제하는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별 고려 조문을 신설하였고, 민원인의 이의 신청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고자 조례의 권리제한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관계법령과의 구조적 정합성과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개정활동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